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-8호

2021년 1회 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

부산광역시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(재공고)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2월 18일

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근거법령

○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7894호, 2021.1.12.)

○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1.5.)

○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, 2020.9.22.)

○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(부산광역시 규칙 제4035호, 2020.11.25.)

2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근무예정부서	임용등급	인원	비고
관광홍보(중국어)	관광진흥과	행정6급	1명	

※ 임용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, 5년 이내 연장 가능(사업 계속 시)

3. 임용분야 주요업무

임용분야	주요업무
관광홍보(중국어)	◦ 중화권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및 관광마케팅 총괄 ◦ 중화권 회의, 행사 등 통역/중화권 각종 관광홍보물 등 번역 및 감수 ◦ 중화권 관광시장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등

4. 응시 자격

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

○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○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○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

<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* 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☞ 2019.4.16.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분야별 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자격요건
관광홍보 (중국어)	행정6급 (일반임기제)	**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** 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▸ **경력인정 범위 :**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, 기업체 등에서 관광홍보 마케팅, 중국어 통·번역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▸ **우대사항** - 중국어 능통자 - 관광홍보 마케팅 유경험자 - 관광(호텔)경영, 관광개발, 관광컨벤션, 관광통역, 통·번역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위 취득자

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**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**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

5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○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
○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○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개별면접

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

○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
※ 5대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6. 보수 수준

구분	상한액	하한액	비고
6급(상당)	76,686천원	51,098천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

※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7. 시험 일정(예정)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합격자발표
'21.2.18.(목)	'21.3.3.(수) ~ 3.5.(금)	서류전형	'21.3.10.(수)	10층 회의실	'21.3.11.(목)
		면접시험	'21.3.15.(월) ~ 3.17.(수)	시청 회의실	'21.3.18.(목)

※ 시험일, 면접장소,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8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 수 처 :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(10층)

다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※ 접수시간은 09:00~18:00(점심시간 제외)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

· 우편접수는 **마감일 우편소인**에 한하여 유효함
(우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

· 우편 접수 시는 '**우체국 통상환증서**(응시수수료)'와 '**반신용 봉투**'를 함께 우송
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'**등기용 우표 부착**' 및 **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**

9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<별지 제1호 서식>

②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
▸응시수수료 : 5급(상당) 10,000원, 6~7급(상당) 7,000원, 8~9급(상당) 5,000원

- 부산광역시 수입증지(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구입) 날인
-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'**우체국 통상환증서**'로 대체

③ 이력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
▸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**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**

④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
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
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 1부

▸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

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▸**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**

▸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
▸**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**

▸**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'주당 근무시간'을 명시하여야 하며**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
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
▸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
▸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"**보험가입 전체기간**" 발급

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<별지 제6호 서식>

⑩ 증명사진 1매 : 3.5×4.5cm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

▸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
② 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

③ 학위·연구논문 사본, 저서, 특허등록,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

▸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<자유서식>

▸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

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(A4 3매 이내)

⑤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1부 <별지 제7호 서식>

▸**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(학과)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**

다. 유의사항

○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
○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

○ 모든 증명서는 **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**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○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※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

○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※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10. 기타사항

○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기 바람

○ **응시원서는 1개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**

○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응시자(서류전형결과 적격자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

○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 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※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

① 경력기간 ⇒ ② 자격증 유무 및 점수 순 ⇒ ③ 성과물 유무

○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시 홈페이지(busan.go.kr)의 채용공고란에 게시

○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

- 응시 관련 : 부산광역시 인사과(☎051-888-1971)
- 직무 관련 :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(☎051-888-5202)